

위험물검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 및 저장을 도모하고 해운 및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 단체로서,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1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직 종	직 급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정규직	검사직	5~6 급	5 명	본부 또는 지부

※ (직급부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2(경력인정) **붙임 1**

(5급 검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6급가 검사원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6급나 검사원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

2 응시원서 접수

항 목	내 용
공고기간	2026. 4. 1.(수) ~ 2026. 4.17.(금)
접수기간	2026. 4.13.(월) 09:00 ~ 2026. 4.17.(금) 18:00
제출방법	○ 채용플랫폼을 통한 응시원서 제출 (komdi.recruiter.co.kr) ※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불가

3

응시자격 요건(판단 기준일: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1

기본요건

- 성별·연령 : 제한 없음
- ※ 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정년)에 따른 **만60세 미만**
- 아래의 어학시험 중 최저기준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사람

어학시험	TOEIC	TOEIC Speaking	OPIc
최저기준	700점	Intermediate Mid 2(120점)	Intermediate Mid 2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6.4.17.)** 기준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은 불인정)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 후 발령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인사관리지침」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령예정일(26.7.1.)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인사관리지침 제19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면접시험 당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예정
- 남성인 경우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 퇴직공직자 등 해당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서류의 주요 내용(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사람

2

직무요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 자격기준 및 직무)

- 다음의 직무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위 2~4.의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근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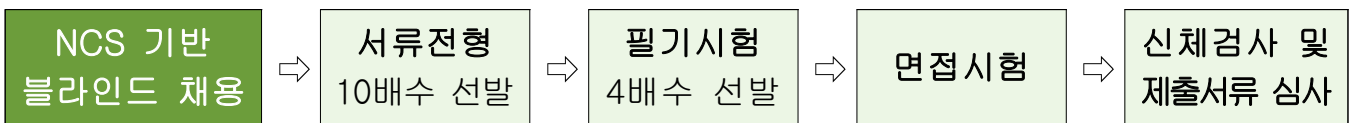
(단위: 천원)

직급 구분	기본 연봉* (2026년 기준)	근로 시간	고용 형태
5급 검사원	40,500 ~ 47,280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정규직
6급가 검사원보	38,171 ~ 40,341		
6급나 검사원보	36,408 ~ 37,205		

* 임용일로부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 제2항에 따른 수습기간 운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급량비, 교통비 등 수당 및 사업실적에 따른 실적급 별도 지급(세부 내용은 내부 급여규정 등에 따름)

5 채용 일정 및 절차

1 채용 절차



전형 단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6. 4.13.(월) ~ 4.17.(금)	마감일 18:00까지 제출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5. 6.(수)	
2단계 필기시험	전형일	'26. 5.16.(토)	서울·경기 지역 중 13:00(예정)
	합격자 발표	'26. 5.20.(수)	
3단계 면접시험	전형일	'26. 5.27.(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 13:00(예정)
	합격자 발표	'26. 6. 5.(금)	
신체검사 및 제출서류 심사		'26. 6. 5.(금) ~ 6.19.(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행(비용 검사원부담)
채용 발령(예정)일		'26. 7. 1.(수)	

※ 모든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채용플랫폼 '마이페이지'를 통해 안내(안내 후 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구분	심사항목		내용																
서류 전형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가. 응시자격요건(직무요건)</td> <td>적합/부적합</td> </tr> <tr> <td>나. 자기소개서</td> <td>40점</td> </tr> <tr> <td>다. 어학성적</td> <td>60점</td> </tr> <tr> <td>라. 사회형평적 가점 대상자(해당시)</td> <td>5~10점</td> </tr> <tr> <td>합 계</td> <td>100 점 (최대 110점)</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배점	가. 응시자격요건(직무요건)	적합/부적합	나. 자기소개서	40점	다. 어학성적	60점	라. 사회형평적 가점 대상자(해당시)	5~10점	합 계	100 점 (최대 1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직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 자격기준 및 직무)에 따른 직무요건 등 응시자격 요건 적합여부 확인 ※ 부적합자는 별도 채점 없이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심사(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 작성(동일 내용 반복, 비속어, 미작성 등), 블라인드 작성 가이드 위배 여부 확인 붙임 2 - 5단계(탁월~미흡)로 구분하여 정성평가 ○ 어학성적 심사(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성적 배점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붙임 3 ○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심사결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가점 포함)으로 결정 				
	심사항목	배점																	
	가. 응시자격요건(직무요건)	적합/부적합																	
	나. 자기소개서	40점																	
	다. 어학성적	60점																	
	라. 사회형평적 가점 대상자(해당시)	5~10점																	
합 계	100 점 (최대 110점)																		
필기 시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시험과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인성검사</td> </tr> <tr> <td colspan="2">NCS 직업기초능력 시험</td> </tr> </tbody> </table>		시험과목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시간 : 240문항 / 30분 - 부적격자인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과목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 5과목 - 문항/시간 : 30문항 / 45분 ○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NCS직업기초능력 시험성적이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가점 포함)으로 결정 										
	시험과목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면접 시험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 <td>20 점</td> </tr> <tr> <td>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td> <td>20 점</td> </tr> <tr> <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 <td>20 점</td> </tr> <tr> <td>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td> <td>20 점</td> </tr> <tr> <td>마.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td> <td>20 점</td> </tr> <tr> <td>라. 취업지원 대상자(해당 시)</td> <td>5~10 점</td> </tr> <tr> <td>합 계</td> <td>100 점 (최대 110점)</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배점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점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	20 점	라. 취업지원 대상자(해당 시)	5~10 점	합 계	100 점 (최대 1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심사위원이 직무관련 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심층면접 ○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성적이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순(가점 포함)으로 합격자 결정
	심사항목	배점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점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	20 점																	
라. 취업지원 대상자(해당 시)	5~10 점																		
합 계	100 점 (최대 110점)																		

3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

4

최종·예비합격자

구 분	합격자 결정방법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진위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 채용관련 서류(응시자격요건, 서류전형 심사항목, 가점 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 ○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합격판정) 확인 (검사비용 검사원부담)
예비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임용 부적격 판정, 부정 합격자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합격기준) 면접시험성적이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순(가점 포함, 최종합격자 제외) - (예비합격인원) 3명 - (임용유효기간) 6개월 ※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발생 시 해당 공고일 전까지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서류진위여부 확인결과, 제출서류 누락, 증빙불가 또는 허위사실 발견 등
-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퇴직공직자 등 해당자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임용 전까지 받지 못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부정합격자

1.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사람
2.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사람
3.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발견된 사람

※ 위 부정합격자는 즉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

6

가점대상항목(사회형평적 인력채용)

항 목	가 점	전형별 적용			제 출 서 류
		서류	필기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5~10점	●	●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5점	●	-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40%미만을 득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으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함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

7

응시자 제출서류

제 출 시 기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제출시 (온라인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플랫폼에서 작성·제출												
필기시험 대상자 (온라인 제출)	○ 신원확인용 본인 사진 및 출생월일 ※ 채용플랫폼에서 등록·제출												
면접 대상자 (사본, 현장제출)	○ 어학성적증명서(TOEIC, TOEIC Speaking, OPIc) ○ 직무요건 증빙용 서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직무요건 관련(Page.3 참조)</th> </tr> </thead> <tbody> <tr> <td>1호</td> <td>졸업증명서(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화공)</td> </tr> <tr> <td>2호</td> <td>3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td> </tr> <tr> <td>3호</td> <td>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td> </tr> <tr> <td>4호</td> <td>선박검사원 관련 경력증명서</td> </tr> <tr> <td>5호</td> <td>관련 증빙서류</td> </tr> </tbody> </table> ○ 병역증명서(남자에 한함,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으로 대체 가능) ○ 가점 대상자 증빙용 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직무요건 관련(Page.3 참조)		1호	졸업증명서(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화공)	2호	3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	3호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4호	선박검사원 관련 경력증명서	5호	관련 증빙서류
직무요건 관련(Page.3 참조)													
1호	졸업증명서(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화공)												
2호	3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												
3호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4호	선박검사원 관련 경력증명서												
5호	관련 증빙서류												

<p>면접 합격자 (원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당일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 ○ 증명사진(3cmx4cm) 1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관련 소지학위 서류 모두 제출 ○ 면허 및 자격증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승선경력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교부하는 승무경력서만 인정 ○ 채용신체검사서(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

- 유의사항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해기사 면허증 제외)는 반드시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진위여부 확인 예정)**로 제출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현장 제출**(면접시험 전 안내 예정)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를 포함한 경우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 개명하여 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사실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제출

8 채용서류 반환 붙임 4

- (반환대상)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시험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방법) 경영전략팀(ksu227@komdi.or.kr)으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란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만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 (반환기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비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담(특수취급우편물(예, 등기)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부담*)
 - * 수취인 부담 발송 또는 비용입금(국민은행 008-01-0462-650, 예금주: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응시원서 작성 시 이름, 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인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첨부서류 미제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전략팀(031-389-2157) 또는 카카오톡 채용문의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업무시간 중 응대, 평일 09:00~18:00)

- 붙임 1.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2(경력인정)
 2. 블라인드 작성 가이드
 3. 서류전형 배점기준(어학성적)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끝.



제26조의2(경력인정) ① 신규 채용된 5급 이하 검사직 및 관리직의 경우, 별표 제6호의 경력 인정기준 또는 소지한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부여한다.

1.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5급
2.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6급가
3.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 6급나

⋮

③ 제1항에 따라 직급 부여에 반영된 경력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초과경력에 대하여는 기본급여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제6호) 검사직 경력 인정기준(제26조의2 관련)

경 력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 군 의무 복무기간 ○ 해양수산물관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인사위원회에서 기관규모 및 수행업무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실무경력 이외의 기관 및 업·단체 근무경력 ○ 인사위원회에서 기관규모 및 수행업무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 경우 	50%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응시자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과정 중 공정성을 더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작성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반드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 인적사항에서 요구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병역사항 등)는 채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특정 대학교 출신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입력 금지 ex) 000@komdi.ac.kr
- 학력은 학부·학과명 및 전공(직무요건 확인용)만 기재하고, 학교명 기재 금지

□ 경력 및 경험사항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보수, 급여 등)을 받는 경우
 - 기관·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인턴 포함)
- (경험사항) 금전적 보상(보수, 급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동아리, 장학생, 학회활동, 프로젝트(프로그램) 등
- (기관·기업 경력/경험) 명칭, 직무, 부서, 분야 등 모든 항목 언급 가능. 단, 소재지 또는 근무지가 학교인 경우 언급 불가
- (학교 교육, 대외 경험 등) 학교명 언급 불가(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프로그램·동아리·학생회 명칭 등 포함)

블라인드 처리 예시

- 한국배터리 화학연구원 / 회사명 언급 가능
- 인천해사고, 한국대학교 -> 00해사고 교원, 00대학교 조교 / **학교명**
- 검사원 인천지부, 인천항만공사 -> 검사원 00지부, 00항만공사 / **지역명**
- 한국대학교 00동아리, ◇◇학생회 -> 00대학교 00동아리, ◇◇학생회

- 이름, 출신지,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위 반 예 시	비 고
이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동 입니다.	
출생지	해양의 도시 부산 에서 태어나	
연령	20세가 되던 해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성별	승선근무예비역 으로, 갑판병 으로 근무 등	의무복무는 남성임을 특정 (장교·부사관 경력 언급 가능)
	동아리 형, 누나들 과 원만한 관계를	특정 성별 유추
종교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와,	특정 종교 유추
신체조건	185cm의 건장한 체격 으로 운동부 생활을	키, 체중, 용모 등
학력 출신학교	저는 한국대학교 에서 화학과를 졸업하여, → 00대학교 화학 과로 블라인드 처리	동아리/학생회명 등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혼인·임신	현재 한 가정의 아버지(어머니) 로	
가족관계	선장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 를 본받아,	

붙임 3

서류전형 배점기준(어학성적)

심사 항목	구 분		평 정 점 수
	종 류	점 수 (등 급)	검 사 직
어학 성적	TOEIC	950점 이상	60
		900점 이상 950점 미만	57
		850점 이상 900점 미만	54
		800점 이상 850점 미만	51
		750점 이상 800점 미만	48
		700점 이상 750점 미만	45
	TOEIC Speaking	Advanced Mid(180~190점) 이상	60
		Advanced Low(160~170점)	57
		Intermediate High(140~150점)	54
		Intermediate Mid 3(130점)	50
		Intermediate Mid 2(120점)	45
	OPIc	Advanced Low	60
		Intermediate High	55
		Intermediate Mid 3	50
		Intermediate Mid 2	45

※ 구분 항목 중 평정점수가 부여된 가장 하위 구분점수를 최저 합격기준으로 하며, 제출한 시험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으로 평정점수를 산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